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

2023. 상반기.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처분요구일람표

1.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 3
2.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시정)	····· 5
3.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채용 및 관리(운영) 부적정	(시정)	····· 7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주의)	····· 9
5	국외여행 항공운임 과다 지급	(시정)	····· 12
6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지정 및 임시일상경비 교부·정산 부적정	(주의)	····· 14
7	해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 16
8	공무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주의)	····· 1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표]와 같이 0000년부터 0000년까지 ☆☆☆ ☆☆☆ ☆☆ 촬영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비고
1	☆☆☆☆☆☆☆☆☆과 ○○○○○○ ◇◇◇ ●● ▣▣▣ 제작	㈜★★★★	0000.00.00	00,000	1인 수의계약	
2	☆☆☆ ○○○ ●● ▣▣ 및 ▽▽▽ 구축	㈜★★★★	0000.00.00	00,000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상기 [표]의 2개 용역이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일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와 업체 선정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는 사유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견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 결과 동종의 다수의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 ◈◈◈는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례금 세부내역(교통비·숙박비·식비)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0000.00.00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에서 교통편 제공 혹은 여비 관련 실비 지급 시에는 출장비(교통비)를 별도로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0000)을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임직원은 외부강의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시 작성된 사례금 세부내역(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확인하고 요청기관에서 교통편 제공 혹은 여비 관련 실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출장비를 수령하면 안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 ◇◇◇◇ ◈◈◈ 등 00명이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에 따른 사례금에 여비 등을 포함한 실비가 포함되어있었고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단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중복 수령한 출장비 000,000원을 회수하기시 바라며,**(시정)**
② 관련자 중 ▤▤▤▤ ◈◈◈은 ▣▣▣ 처분하시고,
③ ▤▤▤▤▤ ◈◈◈는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채용 및 관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해외사무소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현지직원(전문직·행정직·기능직)을 최대 4명 채용할 수 있고 해당지역 시범마을 수에 따라 별표4의 '사무소 현지직원 정원기준표' 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현지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을 통하여 선발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장은 현지법규를 반영하여 적합한 채용방법을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장은 채용이 필요할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기준 등 세부시행방법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본부의 사업부서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해외사무소의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기준 등 세부시행방법 등을 포한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채용에 따른 현지직원의 정원은 최대 4명으로 유지하되 해외사무소별 시범마을 수(4개소 이하 0명, 5~6개소 추가 1명, 7~9개소 추가 2명, 10개소 이상

추가 3명)에 따라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채용하고 그에 따른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을 정원 규정에 맞게 4~7명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등 적정하게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을 채용 및 관리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현지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채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시행방법 등을 포함한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채용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단순하게 채용결과만을 재단본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개의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현지직원을 채용 및 관리하면서 0000년도의 경우 ■■■■■ 등 00개소, 0000년도의 경우 ◐◐◐◐◐ 등 00개소, 0000년의 경우 ◑◑◑◑◑ 등 00개소가 정원을 초과하여 현지직원을 채용 및 관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현지직원에 대한 계획성 없는 채용, 정원대비 초과 운영 등으로 현지직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져서 일부 해외사무소의 경우 현지직원과 재단과의 퇴직금 분쟁관련 법적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출되지 말았어야 할 현지 변호사 비용(약 00,000천 원 기지출)과 향후 추가적인 합의금(약 00,000천 원)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해외사무소 현지 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 ◈◈◈과 ▦▦▦▦▦ ▣▣▣는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된 재직자 중 1년 이상 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8.5.31.)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준의 일반원칙인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연중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는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을 준거로 활용하되 사업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0000.00.00.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는 경상북도의 '0000년 ▲▲▲▲ ▽▽▽▽ 결과 통보'(▨▨▨▨▨▨-0000(0000.00.00.))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00개소에서 00개소로 일부축소운영하며 그중 ◔◔◔◔◔ 해외사무소의 경우 0000년에 사업을 종료하고 ◒◒◒◒◒ 해외사무소는 0000년 폐쇄(출구)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장기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경상북도로 회신하였다.

그리고, 0000. 00. 00 ◑◑◑◑◑ 현지사정(코로나 등)에 따라 기존 0000년 종료 및 0000년 폐쇄(출구)에서 0000년 종료 및 0000. 00 폐쇄(출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장 검토 보고서를 작성 후 0000. 00. 00. 경상북도 소관 부서인 경상북도 ▲▲▲▲▲과로 ◒◒◒◒◒ 해외사무소 운영 연장 검토요청을 발송하였고 0000. 00. 00. 상기내용으로 경상북도 ◧◧◧◧◧과로부터 ◒◒◒◒◒ 해외사무소 연장 승인을 득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내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때에는 연중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완료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0000. 00. 00. '000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 ▲▲▲ ☆☆ 추진계획'(○○○○○-0000)을 작성하면서 중장기운영계획에 따라 0000년 폐쇄 예정인 ◒◒◒◒◒ 해외사무소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였고,

0000. 00. 00. '0000년 ▽▽▽▲▲□□위원회' 및 0000. 00. 00. '0000년 제0차 ▽▽▽▲▲□□위원회의'에서도 단순 정규직전환대상자의 경력 등만을 표시하고 향후 2년 이내 폐쇄 예정인 ◨◨◨◨◨ 사무소에 대한 자료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0000. 00. 00. 최종적으로 0000년 폐쇄예정인 ◕◕◕◕◕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을 포함하여 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외되었어야 할 2년 이내 폐쇄예정인 해외사무소 근무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 ▣▣▣는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외여행 항공운임 과다 지급**

소 관 청 경상북도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새마을재단「여비규정」제16조에 따라 국외여행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재단「여비규정」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동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Ⅴ.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으로 국외 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재단에서 공무여행을 실시할 경우 새마을재단「여비규정」,「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항공운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새마을재단 **▲▲▲▲▲**에서는 항공운임 영수증, 전자항공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여행사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국외항공운임을 지급하였다. 이에 0000년 00건의 국외여행 전자항공발행확인서 등으로

항공운임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0000.00.00. ~ 00. 00. ◔◔◔◔, ◘◘◘◘ ◙◙◙◙ 사업지 점검 항공운임에 000,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총 0명에게 항공운임 0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한 국외여행 항공운임 000,000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관련자 ▤▤▤ ◎◎◎과 ◎◎◎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지정 및 임시일상경비 교부·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재무회계규정」제72조에 따르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임시일상경비의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임시일상경비등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前回)의 일상경비등을 정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서는 0000년 ○○○○○ 0차 ◉◉◉연수 사업(◘◘◘◘ ◇◇◇ ▦▦▦ 운영) 외 0건의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하고, 임시일상경비를 집행한 후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을 5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임시일상경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에게는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서는 ○○○○○ 0차 ◉◉◉연수 사업(◘◘◘◘ ◇◇◇ ▦▦▦ 운영) 외 0건의 사업을 추진 후 사무종료일(0000.00.00., 00.00., 00.00.,

00.00., 00.00.) 이후 5일 이내에 정산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짧게는 00일에서 최장 000일이 경과한 후 사업담당자(0건, 정산 후 잔액 미반납)가 아닌 사업관리부서 담당자(0건)가 정산을 처리하였다.

또한 0000.00.00. '◘◘◘◘ ◇◇◇ ▦▦▦ 운영' 해외출장에 따른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담당자 ◕◕◕을 지정, 임시일상경비 교부한 후 임시일상경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0000.00.00. 이후 다시 담당자인 ◕◕◕을 '◈◈◈◈◈ ▧▧▧▧▧ 연수' 등 0건(교부금액 00,000,000원) 사업의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지정하고, 상기 0건 사업에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하였다.

그 결과, 임시일상경비 집행 잔액 00,000,000원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정산기일 5일을 초과하여 짧게는 00개월 길게는 00개월가량 지연하여 반납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해외사업 추진 시 교부되는 임시일상경비의 정산 및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주의)**

② 또한, ▧▧▧ ▩▩▩은 ◑◑◑ 처분하시고,

③ ◉◉◉ ○○○, ◍◍◍ ○○○, ◉◉◉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해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새마을세계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근무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재단 「수당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해외근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하고,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해외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재단에서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병가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그 해당 기간은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새마을재단에서는 0000년에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한 00명의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해외근무수당 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① 부당하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 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 ○○○, ◍◍◍ ○○○은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에서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외출장자에게 항공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집행기준」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에 따르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재단에서는 국외출장을 가면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적마일리지를 조사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새마을재단에서는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항공운임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